

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

송달료(예납) : 33,000원

인지액 : 1,000원

사건번호 : 20 타채 _____

신청인(채무자) 성명 : _____

주소 : _____

피신청인(채권자) 성명 : _____

주소 : _____

제3채무자 1. 상호 : _____

주소 : _____

신 청 취 지

피신청인(채권자)이 신청한 울산지방법원 _____ 타채 _____ 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_____ 년 ____ 월 ____ 일자 결정한 결정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함.

신 청 이 유

별지 기재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,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
2. 통장사본 3.통장잔액증명서 4.거래내역 1년분 5.기타 소명자료

20 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 _____ (서명)

(연락처 : _____)

지방법원 귀중